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9
----------	-----

발의년월일 : 2015년 6월 10일

발 의 자 : 문종철, 김영한, 남창진,
강성언, 김광수(노원),
김기대, 김동윤, 문형주,
오봉수, 유광상, 유 용,
이정훈, 박중화, 우미경,
이석주 의원(15명)

1. 제안이유

최근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반굴착에 따른 도로함몰이나 주변건물 부동침하 등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과거 2005.12.29.일 이전까지 존재하던 굴착심의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지반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성 사전검증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 위원회 심의사항에 '제7조제1항 다목에 의한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

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

나. 구 위원회 심의사항에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7조제1항제2호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다목에 의한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2호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p>제7조 (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p> <p>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바.(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다.(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7조 (기능 및 절차) ① ----- ----- -----.</p> <p>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바.(현행과 같음) 사. <u>다목에 의한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u></p> <p>아. ----- -----</p> <p>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다.(현행과 같음) 라. <u>제1항제1호 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u></p>

<p>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마.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문종철